

# 양계장 증·개·신축, 사전환경성검토에 묶여 진퇴양난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충**남 연기군에서 채란업에 종사하는 L사장은 최근 농장부지에 연접하여 계란 선별장 및 보관창고 200평을 신축을 허가 받기 위하여 군청에 들렀다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신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위한 준비중이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환경정책은 양계인에게는 생소한 분야이고 보니 L사장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다른 양계 농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알아본다.

##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지난 2000년 8월 17일에 변경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을 제거하고, 환경오염지역을 원상회복하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을 위한 사전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농장의 경우 준농림지 및 준보전임지로서 총 개발면적(증·개·신축)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필해야만 된다. 그러나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개발자(농장주)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 조항을 이해해 보자.

질의1) 농장주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농장 연접부지에 사업계획을 인·허가 신청하는 경우 합산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협의 대상(사전환경성검토) 해당여부는?

답변) 같은 시기에 연접 부지에서 다수인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요청하여 그 합산한 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조 별표2 제2호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으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며, 이때에 다수의 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질문2) 행정계획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하여 개발 사업으로 인·허가 신청시 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되는가?**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전에 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다 하여도 다른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사업의 승인 이전에 각각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면적이 기존 면적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다.

**질문3) 개발부지 면적중 농림지역 4,000제곱미터, 준농림지역 8,000제곱미터의 경우 사전 협의 대상인가?**

답변)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 종류가 혼재되어 있어 개발사업의 규모가 상이한 경우에는 상이한 규모에 대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환산(환산계수 10,000(준농림지역 대상규모)/7,500(농림지역 대상규모))하여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산(환산계수 7,500/10,000)하여 7,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성검토 대상이다.

## 2. 사전환경성검토 비용

농가에서 농장 증·개·신축시 관할 환경보호과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대상이라고 결정이 나면 농장주는 사전환경성검토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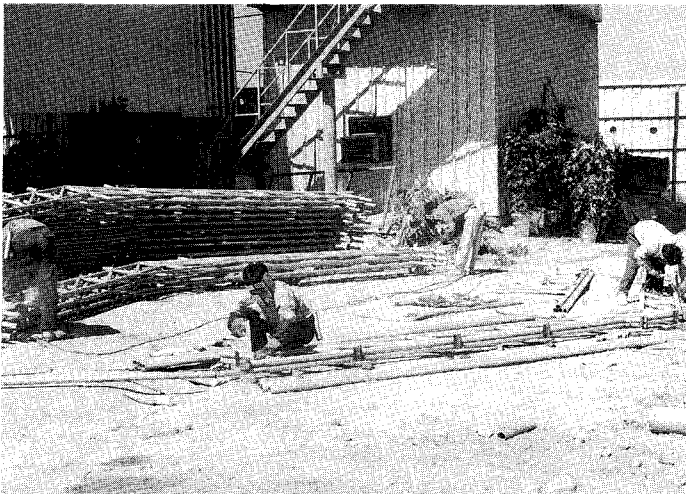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전환경성검토 서류작성은 인·허가 승인기관이 직접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한바, 환경성검토 서류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장주가 쉽게 사전환경성검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지방환경관리청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업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2~3개

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검토시간의 길고 짧음은 환경성 검토 항목이 기본 24개로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소음·악취 등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조사하는데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중 한 계절만 할 것인가 사계절을 다 조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통상적으로 축사의 경우 강변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한 계절만 조사하고 비용은 최소 1,5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강변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2계절 오염도 부분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때 비용은 2,80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의견이다.

### 3. 환경정책 강화 방침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 금강환경관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영산강환경관리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환경관리청과 해당 지역의 관할 사업승인기관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관리 감독하고 있다.

### 4. 축산업에 맞는 사전환경성검토의 표준화·단순화 필요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농가들의 반응은 농장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농가의 불만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비용이 고가라는 점 뿐만 아니라 검토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두 번째 농장 증·개·신축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대상은 새로 개발하는 면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축산법이나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농장운영 관련 건물과 부지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의 농장부지도 증·개·신축부지와 합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 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사후 발생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농가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소규모 개발사업인 축산업에 맞는 표준화·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양계**